



최고 소득세율 인상 개정안 통과, 3억 초과부분 38% 세율 적용

왕양비 연구원

■ 2011년 12월 31일 국회에서 소득세 최고세율 신설 수정안, 즉 3억 원이 넘는 소득에 대해 38%의 최고 세율을 적용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음.

- 2012년부터 시행하기로 예정되어 있었던 8,800만 원 초과 소득에 대한 세율인하 수정안(35%→33%)이 백지화된 가운데, 지난 31일 여야가 재석 244명 중 157명 찬성, 82명 반대, 5명 기권으로 3억 원 초과 소득에 대해 기존의 35%에서 3%p 인상하는 최고소득세율 적용을 통과했음.

〈그림 1〉 금번 소득세법 개정안 통과 후의 종합소득세율

(단위: 만 원)

1,200 이하	1,200 초과~4,600	4,600 초과~8,800	8,800 초과~30,000	30,000 초과
6%	15%	24%	35%	38%

자료: 한국경제.

- 정부는 2011년 과세기준으로 3억 원 초과 최고세율 적용자는 근로소득자 8,000명, 사업소득자 2만 명, 양도소득자 3만 5,000명 등 6만 6,000명이라고 설명했으며, 금번 세율 인상으로 늘어나는 세수는 7,7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함.
 - 그러나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 국가 총 수입예상액인 344조 1,000억 원 중 7,700억 원이 전체의 0.2%에 불과한 수준이며, 재정건전성 개선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함.
- 한편, 소득이 3억 원을 초과한 법인에 대한 특수 세율 적용과 면세자 규모 과다 등 세금 형평성 문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됨.

- 금번 최고소득세율 인상 개정안이 실시된 이후에도 소득이 3억 원을 넘은 개인사업자와 달리 법인에게는 22%의 법인세를 적용될 것이고, 전체의 절반에 해당하는 면세자에 대한 인정 기준도 변하지 않았음에 따라 세금 형평성 논란이 있을 전망이다.

(한국경제, 이투데이 경제, 1/2 등)